

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: 2026년 8월 24일
2. 제 출 자: 구미시장
3. 회부일자: 2026년 8월 25일
4. 상정일자: 2026년 9월 2일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II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김 팔 근

2. 제안이유

가.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반영

나. 민선9기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,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
위한 정원 조정

다.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(한시기구) 신설에 따른 한시
정원 책정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: 1,890명 → 1,945명(증 55) (안 제2조)

1) 집행기관의 정원: 1,841명 → 1,894명(증 53)

2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49명 → 51명(증 2)

나.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삭제 (안 제4조)

다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 3)

1) 정원 총계: 1,890명 → 1,945명(증 55)

2) 일반직 계: 1,846명 → 1,899명(증 53)

가) 4급 계: 13명 → 14명(증 본청 2 / 감 출장소 1)

나) 5급 계: 97명 → 99명(증 본청 6, 직속기관 2 / 감 출장소 6)

다) 6급이하 소계: 1,731명 → 1,781명(증 50)

3) 연구직 계: 8명 → 11명(증 3)

가) 연구관: 변동없음

나) 연구사: 8명 → 11명(증 3)

4) 지도직 계: 34명 → 33명(감 1)

가) 지도관: 변동없음

나) 지도사: 31명 → 30명(감 1)

라. 한시 정원표 (안 별표 4)

1) 골목상권지원단(4급): 신설(존속기한: 2029. 6. 30.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
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를 위해
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민선9기 역점사업 추진,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 정원을 1,890명에서 1,945명으로 55명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.
- 다만, 정원 55명 증원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65억 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증원 인력의 업무량과 신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 음

V. 토 론 요 지: 없 음

VI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VII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